

서울고등법원 2024. 6. 5 선고 2024나20045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4. 6. 5 선고 2024나2004597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2. 7 선고 2021가단13372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

피고, 항소인 A

변론종결 2024. 5. 1.

판결선고 2024. 6. 5.

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1가단133721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와 B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1. 3. 체결된 매매계약을 243,739,13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243,739,135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제1심 판결문 12면 13행의 “을 제11호증”을 “을 제12호증”으로 고쳐 적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.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.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공도일, 판사 성언주, 판사 최항석